지능형(AI) 배리어 프리(barrier-free) 키오스크

1. 규제특례 내용

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하여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·분석 후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(배리어)을 제거하는 서비스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구역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대전광역시,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수원시, 천안시

기간: 2022.12.1.~2024.11.30.

규모: 70대 이내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ㅇ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 촬영시 불특정 다수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,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은 별도로 수집.저장 하지 않고, 당해 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즉시 파기함
- o 카메라 촬영범위 및 촬영각도 등을 최소화하여 당초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함
- 키오스크가 제공하는 서비스(서류발급, 정보제공 등)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시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규정을 준수함
- o 카메라 운용 목적 및 시간·장소, 촬영범위, 촬영된 영상의 파기 방법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함
- o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하지 않음
- o '개인정보 처리방침'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,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,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·감독체계 마련함
- o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,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예정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영업배상 대인 1.8억원/대물 10억원, 생산물배상책임 대인 1.8억원/대물 10억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5억원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